

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

의안 번호	9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9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2조부터 제15조의2 개정 및 「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」 제24조부터 제36조의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업무가 시·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「붙임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15.6.16. ~ 7.6.)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, 저촉사항 없음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관련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
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김광수
연락처	(033) 330 -2253

관 련 법 령 발 취

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

제14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)

① 시·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·평가를 위하여 미술·건축·환경·공간디자인·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. <개정 2011.11.25>

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<개정 2011.11.25>

1. 미술작품의 가격
2. 미술작품의 예술성
3.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
4.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
5.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

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25>

④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1.11.25>